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407-10

# 2010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근해) 집행지침

2010. 1. 28.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04410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500

29.451  
2390  
.2010

# 2010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2010. 1. 28.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순서

I. 개편내용 요약 .....	1
II. 추진계획 .....	2
1. '09년도 사업집행 및 문제점 .....	2
2. '10년 주요개정 내용(근해어선) .....	3
3. 지자체 협조사항 .....	8
4. 향후 조치계획 .....	8
III. 집행지침 .....	11
1. 목적 .....	11
2. 추진방향 .....	11
3.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 .....	11
4. 사업계획 .....	12
5. 신청자격 및 조건 .....	15
6. 입찰 추진절차 및 방법 .....	16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	19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20
9. 계약체결 및 계약 불이행시 제제 조치 .....	20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	21
11. 감척 어선·어구 등 처리 .....	22
12. 어업허가의 취소 및 지원금 지급 .....	25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	27
※ 서식 .....	28
※ 붙임 .....	33
※ 참고자료 .....	47

# I. '10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개편내용(요약)

구 분	'09년도	'10년도
○ 사업규모	○ 연안어선 : 1,610척/805억원 ○ 근해어선 : 129척/490억원	○ 근해어선 : 194척/775억원
○ 폐업지원금 지급방식	○ 50% 정액제	○ 80% 입찰제 - 19개 업종을 3그룹으로 나눠 입찰 실시 * 입찰 부진시 수의계약 실시
○ 참여조건 완화	○ 선령 : 6~10년 ○ 참가신청 서류 : 9종	○ 선령 : 6년 ○ 참가신청 서류 : 4종
○ 무·저조업선 감척참여	○ 감척사업 참여 불가	○ 어선·어구 평가액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참여가능 (폐업지원금 제외)
○ 사업포기시 제한	○ 최종사업자 선정 후 포기시 3년 제한	○ 좌 동 ○ 계약체결 이후 포기시 : 3년 참여제한+감정평가수수료 50% 부담
○ 어선현대화 매입어선	○ 원칙적으로 참여불가 - 산식에 의거 감액 조정하는 조건으로 참여가능	○ 참여제한 해제 -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 100% 전액지원
○ 저선령어선 활용 사업 (신설)	○ 원칙적으로 폐선처리 - 일부만 공공사업용으로 활용	○ 10년 이하의 저선령 어선을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 활용 - 잔존가치평가액의 20% 이상
○ 육상시설 평가 (신설)	○ 어구만 평가하고 육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선권현망 육상가공시설 포함 - 건조기, 선별기 포함 (선주 소유분) * 육상시설지원은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의 30%를 한도
○ 감척 폐어선 활용	○ 승인권자 : 농식품부장관 ○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용으로만 활용	○ 승인권자 : 시·도지사 ○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용으로도 활용가능 * 해외이전시는 농식품부 승인필요

## II. '10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계획

### 주요 개정 내용

- ◆ 폐업지원금을 80%로 상향조정하고 입찰제로 추진(중전 정액제)
- ◆ 참여조건 완화(선령 및 입찰참가 신청서류 간소화)
- ◆ 기존 어선현대화 매입어선('99~'02) 지원금 감액규정 삭제
- ◆ 10년이하의 저선령 어선을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활용
- ◆ 무·저조업선 감척사업 참여기회 부여
- ◆ 기선권현망 육상가공시설(건조기, 선별기) 매입규정 신설
- ◆ 감척 폐어선 활용범위 확대 및 승인업무 시·도에 위임

### 1. '09년도 사업집행 현황 및 문제점

#### □ 집행실적

- 근해어선 129척(490억원), 연안어선 1,610척(805억원) 감척 등 총 1,739척 감척추진(1,295억원)

※ 근해 감척사업 참여부족으로 일부 사업비(805억원)를 연안으로 내역변경

#### □ 문제점

- 유가안정 및 어황호조에 따른 사업참여 부진 및 포기자 과다발생
  - '09년도 감척예산 1,295억원 중 350억원 불용 / 108척 사업포기

※ 감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 도입 및 인센티브 강화 필요

## 2. 주요개정 내용(근해어선)

### □ 폐업지원금 확대 및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 ○ 폐업지원금

<b>종 전</b>	⇒	<b>변 경</b>
폐업지원금 50% 정액제		폐업지원금 80% 입찰제

※ 소비자물가 상승률(5% 수준) 반영('08~'09년도는 미반영 감안)

- 예) 근해채낚기(65톤 이상) : 116,311천원 ⇒ 195,402천원(79,091천원 ↑)

#### ○ 사업자 선정 방식

<b>종 전</b>	⇒	<b>변 경</b>
선령, 소유기간 등 감척 우선순위부터		입찰을 통하여 최저금액 제시자 부터

#### ○ 사업추진 절차



※ 입찰 부진시 → 수의계약 / 필요시 특종 업종에 대한 감척 실시

- 어획강도가 높거나,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업종, 감척사업 참여가 저조한 업종, 기타 정부가 감척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별도의 물량배정과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 연안어선 입찰제와 비교

구분	연안	근해
예정가격 작성	◦ 기초가격의 ± 2% 범위내에서 작성	◦ 작성생략 - 기초가격 이하 최저가 제시자 부터 선정
입찰방법	◦ 직접방문 입찰	◦ 직접방문 입찰 생략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입찰서 동시제출(일봉) * 입찰서 제출을 위해 재방문 절차 생략
유찰시 (참여부족 등)	◦ 현장 재입찰 후 재공고	◦ 현장 재입찰 생략 - 입찰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제출 * 농식품부 취합한 결과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재공고
입찰결과 통보	◦ 현장 즉시 공개	◦ 시·도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취합 후 통보

□ 감척어선 활용범위 확대 및 승인업무 시·도 위임

- 목 적 : 감척어선을 어획능력을 증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활용함에 따른 자원낭비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

○ 주요내용

종 전
◦ 사용용도 : 공공사업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만 활용
◦ 승인기관 : 농식품부

⇒

변 경
◦ 공익사업(사업범위 확대)
◦ 민간단체까지 확대
◦ 시·도지사

※ 승인업무를 시·도 위임에 따른 자율권 부여 및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단,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 승인 필요

## □ 감척어선 매각범위 확대

### ○ 주요내용

종 전
◦ 화물선 등으로만 이용가능

⇒

변 경
◦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운반선, 기타선으로 활용가능

※ 매각대금은 잔존가치의 50% 이상으로 최고가액 제시자(종전은 잔존가치의 100%)

## □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

### ○ 주요내용

종 전
◦ '99~'02년 국제규제 감척시 어선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

변 경
◦ 10년이하의 저선령 어선을 노후어선 교체사업으로 활용 - 잔존가치평가액의 20%이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

※ 사업추진여부는 시·도의 어업여건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추진여부 결정

## □ 참여조건 및 집행절차 변경사항

### ○ 선령제한 완화

종 전
업종별로 6년에서 10년까지 차등

⇒

변 경
6년으로 통일

### ○ 입찰 신청서류 간소화

'09년도 연안어선 입찰
◦ 입찰참가 신청서
◦ 어업허가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어선원부
◦ 선박검사증서 사본
◦ 선적증서 사본
◦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 선체사진
◦ 기타 사업집행주체의 필요서류

9종 ⇒ 4종

'10년도 근해어선 입찰
◦ 입찰참가 신청서
◦ 어업허가증 사본
◦ 인감증명서
◦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입찰서 동시제출(밀봉)
* 잠정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구

## □ 사업포기자에 대한 제재 강화

종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시 : 3년 참여 제한</li> </ul>

⇒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시 : 감척사업 3년 참여제한</li> <li>◦ 계약체결이후 포기시 : 3년 참여 제한+감정평가수수료 50% 부담</li> </ul>

## □ 양식장 관리선 및 낚시어선의 감척사업 참여

종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어선, 양식장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은 사업참여 제한</li> </ul>

⇒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어업으로 조업한 일수가 60일 이상인 경우 참여가능</li> </ul>

※ '09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과 동일하게 규정

## □ 무·저조업선(조업일수 60일 이하) 감척사업 참여기회 부여

종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불가능</li> </ul>

⇒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회 부여</li> <li>-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li> </ul>

⇒ 고령, 사업능력 부족으로 조업할 수 없는 어업인에게 기회부여

⇒ 무·저조업선 감척으로 감척사업의 효율성 제고(감척어업인의 재진입 방지)

## □ 기존지침 명확화 및 명시화

○ 지원대상 및 조건

종 전
3) 어획물운반선 및 선단조업 어선 중 본선의 침몰 등으로 인해 조업(어획물 운반)실적이 없는 어선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

변 경
3) 선단조업 어선중 본선이 침몰한 어선은 폐업지원금(50% 정액) 및 잔여 어선의 어선·어구의 잔존가치 평가액을 지급한다.(단 조업일수 충족)
4) 어획물운반선,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 폐업지원금의 환수

종 전
명시규정 없음

⇒

변 경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치평가액은 제외) 환수
2)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수수료, 폐선처리비용 부담

○ 기존 어선현대화 매입어선('99~'02 국제규제 감척시)

종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li> <li>- 다만, 산식에 의거 감액조정하는 조건으로 참여가능</li> </ul>

⇒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제한 해제</li> <li>- 감액조정 규정 삭제</li> </ul>

⇒ 기존 본인소유 노후어선 해체비용(자부담), 매입현대화어선 개조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

○ 어구 평가시 육상시설 포함

종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시설은 지원대상에 제외</li> </ul>

⇒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가공시설 포함(기선권현망)</li> <li>- 건조기, 선별기 포함</li> <li>⇒ 선주 소유분에 한함</li> <li>* 육상시설지원은 어선·어구잔존가치평가액의 30%를 한도</li> </ul>

⇒ 건축물, 토지 등은 제외

### 3. 지자체 협조사항

- '09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율 향상에 최선의 노력당부
- 사업종료 후 정산 철저(집행잔액 반납 등)
  - 사업 종료된'07~'08년도 사업비정산 - 각 시·도
  - 회계연도 종료된'09년도 사업 실적보고 - 각 시·도
  - 2003~4년도 사업비 정산 - 전라남도
  - 미납된 국고보조금 및 기관·장비 매각대금 납부 - 해당 시·도
- '10년 입찰제 홍보(80% 입찰제)

### 4. 향후 조치계획

- 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추진(2월)
- (가칭) 『어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안 마련('10년 상반기)

[참 고]

□ 시·도별 주요개정 의견

사안별	의 건	검 토 의 건
폐업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액제로 상향조정(50%정액→80%정액) - 울산, 강원, 경남</li> <li>◦ 입찰제로 상향조정(50%정액→100%입찰) - 전북</li> <li>◦ 개별어선별로 평가하여 80% 지원 - 전남</li> </ul>	<p>일부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 입찰제로 추진</li> </ul>
중도포기자 제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3년간 참여제한 과도 ⇒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포기시 3년 제재(부산) - 사업포기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환수</li> <li>◦ 잔존가치 평가후 사업 포기시 2년간 참여 제한 - 울산 - 전북, 충남(직계 존·비속 포함)은 3년간 참여제한 - 전남은 3년 참여제한 규정 삭제</li> <li>◦ 감정평가비용 부담 - 강원, 충남</li> </ul>	<p>일부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사업자 포기시 - 3년 제한</li> <li>· 계약후 포기시 - 3년 제한 +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li> </ul>
조업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업일수 조건완화 (1년이내 60일, 2년간 70일) - 경남</li> </ul>	<p>미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저조업선 감척 추진</li> </ul>
폐업어선 재 활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 외 활용매각 규정 삭제(수요가 거의 없음) - 전북</li> <li>◦ 어업 외 활용매각시 잔존가치평가액 20%이상으로 매각 - 전남</li> <li>◦ 우호 협력국 감척어선 무상증여 등 재활용 확대건의 - 전남</li> </ul>	<p>일부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이상 최고액 제 시자 매각 - 공익용으로 활용범 위 확대</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체처리와 매각을 일괄하여 공개경쟁 입찰 (강행규정) - 전북</li> <li>◦ 어획물운반선 감척범위 확대(감척대상 사업자 소유 운반선도 감척에 포함) - 전남</li> <li>◦ 감척 유경험자 참여제한 규정 삭제 - 전남</li> <li>◦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국비 100% 전액지원 - 전남</li> <li>◦ 연안어선 감척사업 재추진 건의(648척 추가 희망) - 전남</li> </ul>	<p>미수용</p>

□ 업(단)체 주요개정 의견

업(단)체명	의견	검토의견
대형선망수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원임금 6개월분 지급</li> <li>◦ 폐업지원금 확대(50%정액 → 100% 정액)</li> <li>◦ 조업일수 확인(위판장 위판실적 포함)</li> <li>◦ 부속선은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감척</li> <li>◦ 톤급구간 변경(3구간 → 2구간)</li> </ul>	일부수용 - 폐업지원금 확대 (50→80%)
대형기저수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지원금 확대(50%정액 → 100% 정액)</li> <li>◦ 감척어선을 매입하여 어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li> </ul>	
부산 채낚기 선주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현대화어선(국제규제 감척시) 제한규정 삭제</li> <li>◦ 폐업지원금 확대(50%정액 → 100% 정액)</li> </ul>	

### Ⅲ. '10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근해) 집행지침

#### 1. 목 적

-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탄소배출(연료소모)이 많은 업종, 불법어업 가능업종 (국제적인 IUU 근절) 우선감척 등을 통해 선진어업으로 구조개편

#### 2. 추진방향

- WTO/DDA, FTA 체결 등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5%인 1,280여척 감척 추진
- 조업분쟁 및 자원 남획형 어업, 외국의 EEZ내 입어규제 강화로 조업여건이 어려워진 어업, 유류소모량이 많은 업종 등을 위주로 감척

#### 3.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

##### 가. 사업대상

- 1) 근해어선 :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근해어업 중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동해구기저, 외끌이서남구기저, 쌍끌이서남구기저), 근해트롤(대형트롤, 동해구트롤), 근해선망(대형, 소형), 근해채낚기,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잠수기, 근해통발(장어, 기타, 문어단지), 근해형망, 근해연승어업으로 한다.
- 2) 어획물운반선 : 수산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재 어획물운반선으로 등록된 선박 중 1999. 4. 14.이전에 어획물운반업허가를 받은 선박으로서 어획물을 운반한 실적이 있는 경우 동 선박은 어획물운반업등록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 3)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 제1항에 의한 근해어업 허가의 정수 보다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한다.

나. 2010년도 사업 대상어업의 순위

순위	대상어업	순위	대상어업
1	기선권현망	11	대형선망
2	근해통발(장어)	12	근해자망
3	근해연승	13	근해채낚기
4	대형트롤	14	서남해구기선저인망(외끌이)
5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15	서남해구기선저인망(쌍끌이)
6	동해구기선저인망	16	근해형망
7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17	잠수기(제1~제5구)
8	근해안강망	18	소형선망
9	동해구트롤	19	근해통발(문어단지)
10	근해통발(기타)		

※ 감척사업자 선정이후 잔여예산 발생시 동 우선순위에 의거 추가감척 물량 결정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및 지원계획

- 1) 사업비 : 77,500백만원(국고보조)
- 2) 사업물량 : 124 척(통)(이중 105척을 대상으로 1차로 입찰 실시)

구분	대상어업	물량/척	구분	대상어업	물량/척
1그룹	근해연승	31	3그룹	대형선망	4척(통)
	근해채낚기	34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근해자망	14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2그룹	근해통발(장어)	22		대형트롤	
	근해통발(기타)			기선권현망	
	근해안강망			서남해구기선저인망(외끌이)	
	근해형망			서남해구기선저인망(쌍끌이)	
	잠수기(제1~제5구)			동해구기저	
	소형선망			동해구트롤	
	근해통발(문어단지)				

※ 1그룹은 업종별, 2~3그룹은 그룹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업종별 기초가격 대비 응찰율이 가장 낮은 어업인부터 업종(그룹)별 사업물량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선정

※ 어획강도가 높거나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업종, 감척 사업 참여가 저조한 업종, 기타 정부가 감척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별도의 물량배정과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3)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입찰내역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초금액 대비 응찰율이 가장 낮은 어업인부터 4가-2)에서 정한 업종(그룹)별로 예산(사업물량) 범위내에서 감척 대상자를 잠정적으로 결정(이하 “잠정사업자”라 함) 하여 통보한다.

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잠정 사업자를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작성·통보한다.

다) 시·도지사는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 내역서 조정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나. 사업 집행주체

1) 사업 집행주체는 시·도지사이다.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협중앙회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은 사업 집행주체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다. 사업 집행체계

1)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요예산 확보, 사업집행지침 수립, 사업대상자 잠정 선정, 예산 및 물량배정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2)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한다.

가) 사업 안내 등 홍보

나) 사업 참가자 서류심사 및 접수

다) 입찰집행

라)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체결

바)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사)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3) 시·도지사는 사업 참가자 서류 접수, 감척어선 관리 및 폐선처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라. 지원대상 및 조건

- 1)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및 어선해체 처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 2) 폐업지원금은 해당 어업별·톤급구간별로 조사된 금액을 입찰제를 통하여 최대 80%까지(붙임 1) 지원하고,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평가액(이하 “잔존가치 평가액”이라 한다)은 개별 어선별로 평가하여 100%로 지원한다.
- 3) 선단조업 어선중 본선이 침몰한 어선은 폐업지원금(50% 정액) 및 잔여어선의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을 지급한다.(조업실적이 5.가.1)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 폐업지원금(50% 정액) : 붙임 1 기초가격의 5/8

- 4) 어획물운반선,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 5) 기선저인망어업의 쌍끌이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1척이 침몰하여 시행 기준일 전부터 1척으로 조업한 경우 그 잔여 어선에 대한 쌍끌이 기준 폐업지원금의 50%를 수령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척으로 조업한 기간이 시행기준일 현재 3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조업기간이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한다.

예시) A : 선단조업기간(월), B : 잔여 어선 조업기간(월) C : 폐업지원금(50% 정액)

$$\text{수령액} = A(36-B)/36\text{개월} \times C + B(\text{시행일기준-잔여조업시작일}) / 36\text{개월} \times C \times 50\%$$

- 6)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 감척할 경우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이 경우 당해 업종별 수협은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

지사는 등선·어획물운반선을 감척한 선단이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향후 감척사업 대상에선 제외됨을 본선의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 3), 4), 5), 6) 해당어선의 감척은 입찰이 아닌 별도의 절차에 의거 추진하며,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및 물량은 '09년 사업집행지침에 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다.

7) 근해어선 감척사업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100%로 한다.

8)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수한 어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5. 신청자격 및 조건

### 가. 신청자격

1)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으며, 이 신청자격은 입찰 참가자격과 동일하다.

가)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 기준일은 2010. 1. 30로 한다. 시행 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2009. 2. 1 ~ 2010. 1. 30)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2008. 2. 1 ~ 2010. 1. 30) 90일 이상 조업(어획물 운반)실적이 있는 자. 다만, 어획물운반선 및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잔존가치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부속선이 있는 경우 대상어업에 속한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시행 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업실적은 출입항신고 실적으로 확인하며 실질적인 어업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선박 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선박안전법령에 의거 계류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 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최종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선을 상속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참가자격이 없다.

가) 사업시행일 기준으로 5년(2005. 2. 1. ~ 2010. 1. 30)이내에 연근해어업구조 조정사업(국제 감척, 근해어선감척, 연안어선 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 태풍피해지원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 어선외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은 참여할 수 없으며, 전용 사용여부는 사업집행주체가 판단한다.

다) 대상 어선이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다만, 일부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 금액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

나. 선령 :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 6. 입찰 추진절차 및 방법

### 가. 입찰안내

(1) 사업집행주체는 입찰공고 이전에 “세부사업 집행계획”, “어선감척사업 입찰 유의서”등 어업인들이 감척 참가요령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입찰 대상 허가어업자,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2) 사업집행주체는 어업인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나. 입찰공고

(1) 입찰은 입찰공고문에 의하되 사업집행주체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할 수협, 어촌계 등에 문서로 발송하여 가능한 많은 어업인들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문에는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입찰에 붙이는 사항

(나) 입찰방법(입찰신청서류 제출시 입찰서를 밀봉하여 동시제출)

(다) 입찰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라) 입찰 일시 및 장소

(마) 계약체결 방법

(바) 입찰참가 자격

(사) 입찰참가 신청서류

(아)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구간별 기초가격(붙임 1)

(자)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입찰공고문은 표준입찰공고문(참고자료 3)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다. 입찰참가 신청

(1) 입찰참가는 입찰참가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며, 입찰 대상 업종(그룹) 별로 입찰대상 척수 이상의 유효한 참가자가 등록하여야 입찰이 성립된다.

(2)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입찰서 1부(밀봉 날인)

(마)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라. 입찰등록

-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의한 입찰등록서(서식 5)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 (2) 입찰등록은 등록 마감일 일과시간(18:00) 이내로 하며, 입찰 신청시 제출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3) 입찰등록과 동시에 입찰서를 밀봉 날인하여 사업시행주체(시·도)의 입찰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마. 입찰집행

- (1) 입찰은 입찰집행관이 '10. 3. 17. 14:00 전국 시·도 동시에 입찰함의 입찰서를 개봉함으로서 입찰을 집행한다.  
※ 각 시·도의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1~2일 변경 가능
- (2) 입찰시 수협관계자, 어업인, 공무원 등 최소 3인 이상은 배석하여 입찰집행 상황을 참관하여야 한다.
- (3) 입찰참가 신청한 어업인은 누구나 입찰장소에 입장하여 참관할 수 있다.
- (4) 입찰결과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과 업종(그룹)별 등급·구간별 기초가격과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고, 전체예산을 고려하여 입찰대상 척수의 13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한다.
- (5) 입찰결과 참가어업인의 요구시 본인의 응찰금액 및 응찰율, 시·도내 우선 순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6) 입찰결과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초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이다.
- (7) 시·도별 입찰집행관은 제출된 입찰서를 개봉하여 붙임 4서식에 의거 우선 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국자료를 취합하여 (4)에서 정한 방식에 의거 잠정사업자를 선정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 (8)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재공고 입찰에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기초가격 이하로 협상에 의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바. 입찰결과 안내

- (1)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의 집행절차, 예산의 지원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개인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3)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은 동일 업종(동일그룹)의 서열이 가장 낮은 사업대상자의 응찰율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한다.

## 사. 기타

- (1)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붙임 2)에 의한다.

#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 가. 감정평가

- (1)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2 이상의 감정평가사(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인(단체)이 원할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 (2)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5(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와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붙임3)에 의한다.
- (3) 사업집행주체가 감정평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평가가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4) 사업집행주체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 (5)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상태 등에 대해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가. 사업자 선정

- (1)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 (2)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1)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집행주체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가) 사업자의 확정 및 지원금 집행 결정에 관한 사항
- (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9. 계약체결 및 계약 불이행시 제제 조치

### 가. 계약체결

- 1)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자와 표준계약서(서식 4)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을 따로 정하여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동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 3) 2)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 주체가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계약 이행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4) 시·도지사가 지원금 교부결정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결정 내용과 수산업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의 허가가 폐지되고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허가도 폐지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 5)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 포함)·확정, 사업비 중 국고금 집행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물식품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물식품부 고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계약불이행시 제재 조치

- 1)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향후 3년간 어선감척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2)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향후 3년간 어선감척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해당 어선의 감정평가수수료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 가.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 및 계약상대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 및 계약상대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1. 감척 어선·어구 등 처리

###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 1) 계약 상대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사업비 지급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3)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을 인도받은 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대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전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서의 목록과 대비하여 변동 및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인도받아야 한다.
- 5)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일선수협에 통보하고, 일선수협은 당해 어선의 유류공급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 나.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

-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감척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3) 감척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에서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감척 대상어선의 어선어업 외 용도로 매각

- 1)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을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2)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선어업의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라.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

- 1) 폐업어선 중 선령 10년 이하의 저선령 어선을 노후어선 대체에 활용코자 하는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단,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은 각 시·도의 어업여건 등을 감안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 2) 어선의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사업집행주체는 폐업어선을 매각할 경우, 동일 시·도에서 대체하고자 하는 동일 업종의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자(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침몰어선의 어업자는 포함)에게 입찰을 통해 매각하여야 한다.  
※ 타 업종이더라도 어선현대화 어선을 매입하여 개조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 사업참여 가능
- 4) 사업집행주체는 입찰 참가자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대체하고자 하는 어선의 톤수가 수산자원보호령 제26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대체어선의 실제 존재여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함
  - 어업허가증·선박국적증서·어선검사증서 사본
  - 최근 1년간 조업실적·선명이 표시된 어선의 전체사진

- 5) 사업집행주체는 입찰 참여자가 종전에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업인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외 하여야 함.
- 6)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당해어선을 어업허가, 어선등록 등을 본인의 소유로 한 후 5년간 매각, 임대 등으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10년간 정부(지자체)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7) 사업집행주체는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상기 6)의 규정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선박매매계약의 매각조건, 공증각서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어선원부, 선박국적증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8)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사업집행주체에게 신고한 후 감독을 받아 피대체어선을 어업인의 비용으로 완전해체 처리하고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을 말소 한 후 폐업어선을 대체하여야 한다.
- (9)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 대상어선은 지원금 집행 후 매각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비는 어선의 매각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 마. 해체처리 등

- 1) 기관 및 장비품 등 매각이 가능한 물품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매각, 해체처리 하여야 한다.
  - 가) 입찰 예정가격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입찰 할 수 있다.
  - 나) 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 2) 선체는 선박 해체처리 업체(조선소, 구조물 철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 가) 해체처리 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최저 금액으로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업 집행주체는 위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 및 장비품 등을 매각한 후 선체에 대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박 해체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할 수 있다.

가) 해체 처리시에는 사전에 사업 집행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 처리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한 해체 처리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 업체가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한 후 소각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11-마-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체처리대상 업체선정과 감척어선의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어구 등의 매각을 일괄하여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다.

6) 시·도지사는 선박 해체처리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바. 매각대금의 처분

1)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국고에 납부하고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2)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국고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금은 감척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2. 어업허가의 취소 및 지원금 지급

가.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대상자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어선·어구 및 어업허가증을 인도(반납)받은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개별 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체 증명서가 제출되어 어선등록을 말소한 후 지급하거나, 사업추진상 필요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감척 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감척대상 어선으로 결정된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해 정부 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선의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E = A - \{ C - (C \times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 + 잔존가치 평가액)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계약상대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다. 잠정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감척사업비 지급전에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 1) 어업인이 감척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화재 및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
- 2) 잠정 사업자가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3)이외의 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한다.
- 3)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험(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 사업비의 집행은 계약상대자가 시·도에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마. 시·도지사는 현장 확인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등)에 대해 별도로 지방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바. 폐업지원금의 환수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액은 제외)은 환수하여야 한다.
- 2)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수수료, 폐선처리 비용도 부담시켜야 한다.

###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도지사が必要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나.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집행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시·도지사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라.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1)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자원관실 어업정책과( TEL 02-500-2355~6 )
  - 2) 시·도 : 수산과(수산행정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등)
- 마. 본 사업의 집행순기와 추진 절차 : 참고자료 1~2 참조



(서식 2)

###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 가. 주소 및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나. 선박제원 및 허가내역

허가번호		허가기간	. . . ~ . . . ( )		
어선명	어선번호		어업의 명칭.종류		
건조일자		톤수	허가톤수 : , 표시톤수 :		
선체재질		기관종류	육상디젤( ), 디젤( )	마력	

상기 본인은 2010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어업허가 폐지에 동의할 것을 확인함

2010. . .

위원인 주소

성명 (인)

(서식 3)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10.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입 찰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선 박 재 원	선 명			어업의 종류	
	신통수			건조일자	
<p>본인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 하여 수락되면 귀 기관이 정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반납하고 어선 을 폐선 처리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10. .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입 찰 자 (인감도장)</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귀하</p>					

(서식 4)

어선감척사업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자	발 주 처	
계 약 자	계 약 상 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명 : -</li> <li>• 주민등록번호 : -</li> <li>• 주 소 : -</li> <li>• 연 락 처 : -</li> </ul>
계 약 내 용	어 선 명	어업의 종류(톤수)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 폐업지원금 : -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
	지 체 상 금 율	0.15%
	어업허가증 반납일자	2010. . 까지
	어선 반납일자/장소	2010. . 까지/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해당어선의 감정평가수수료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p>시·도의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어선감척사업 최종 사업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불임서류 : 1. 어선감척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2.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부. (생략)                      3. 어선 장비 등 물품내역서 1부.</p> <p style="text-align: right;">2010. . .</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시·도 계약담당관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상대자 (인)</p>		



(붙임 1)

## 폐업지원금의 어업별 · 톤급 단위별 기초가격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근해어선) 기초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공고시 해당업종의 기초가격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어업 종류별	톤급단위(본선기준)	기초금액* (천원)	비 고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구분 없음	263,138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100톤 미만	307,717	*) 2척 기준금액
	100톤~130톤미만	505,640	
	130톤 이상	597,618	
중형기선저인망(동해구기저)	구분 없음	286,610	
중형기선저인망(서남구 외끌이)	구분 없음	409,067	
중형기선저인망(서남구 쌍끌이)	50톤 미만	390,708	*)2척 기준금액
	50톤 이상	615,495	
근해트롤(대형트롤)	구분 없음	517,559	
근해트롤(동해구트롤)	40톤 미만	243,338	
	40톤이상	530,541	
근해선망(대형선망)	100톤 미만	398,212	*)선단기준금액 - 본선1, 등선 2, 운반선 3척
	100톤~120톤미만	1,509,576	
	120톤 이상	1,829,243	
근해선망(소형선망)	구분 없음	163,775	*)선단기준
근해채낚기	35톤 미만	139,146	
	35톤~65톤미만	160,786	
	65톤 이상	195,402	
기선선인망 (기선권형망 제1구)	200톤 미만(선단기준)	348,314	*) 선단기준금액 - 본선2, 어탐선1, 가공및운반선 2척
	200톤 이상(선단기준)	485,989	
근해자망	35톤 미만	130,914	
	35톤~65톤미만	178,038	
	65톤 이상	219,972	

어업 종류별		톤급단위(본선기준)	기초금액* (천원)	비 고
근해안강망		35톤 미만	134,686	
		35톤~65톤미만	187,533	
		65톤 이상	220,989	
잠수기	1구	구분 없음	194,052	
	2구	구분 없음	117,650	
	3구	구분 없음	117,650	
	4구	구분 없음	113,980	
	5구	구분 없음	177,097	
근해통발(장어통발)		35톤 미만	159,052	
		35톤~65톤미만	206,712	
		65톤 이상	269,191	
근해통발(기타통발)		35톤 미만	149,841	
		35톤~65톤미만	205,199	
		65톤 이상	271,525	
근해통발(문어단지)		구분 없음	144,882	
근해형망(패류형망)		구분 없음	152,919	
근해연승		20톤 미만	142,694	
		20톤~35톤미만	163,625	
		35톤이상	193,190	
자리돔들망		35톤 미만	69,572	
		35톤~65톤미만	80,393	
		65톤이상	97,700	
봉수망		35톤 미만	69,572	
		35톤~65톤미만	80,393	
		65톤이상	97,700	

※ 위 금액은 감척 대상어선에 지급되는 척(통, 선단)당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톤수는 본선의 신통수 기준임(단, 기선선인망은 선단 기준 톤수), ‘10년도 폐업지원금은 ‘08년도 물가상승율(4.7%) 미반영분, ‘09년도 물가상승률(2.8%)을 감안 ‘09년도 폐업지원금에 대비 5% 인상 적용

※ 최근 업종별 감척사업 참여 실적 등을 감안하여 개별 업종의 폐업지원금 기초 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하는 등의 조정을 할 수 있음

(붙임 2)

##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 (목적) 이 유의서는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서식 1)
  -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다. 인감증명서 1부
  - 라. 입찰서 1부.
  - 마. 기타 시·도지사(시장·군수)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4.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부받을 수 있다
  - 가. 입찰공고문
  - 나.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 다. 입찰참가 신청서(서식 1)
  - 라. 어선감척사업 표준계약서(서식 4)
  - 마. 어선감척사업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시·도지사(시장·군수)가 제시하는 경우]
  - 바. 기타 참고자료

5.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어선감척사업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6. (입찰) ①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7.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은 입찰서(서식 3)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8.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9. (경쟁입찰의 성립) 입찰은 사업집행주체가 입찰공고한 대상 업종(그룹)별로 대상 척수 이상이 참여하여야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10.(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나. 입찰자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다. 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마.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바.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차.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잠정사업자의 선정) ①시·도별 입찰집행관은 제출된 입찰서를 개봉하여 붙임 4 서식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폐업지원금을 가장 낮게 제시한 어업인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잠정사업자로 선정 시·도에 통보한다.

12.(재공고 입찰) ①입찰결과 유효한 사업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13.(사업대상자의 결정) ①사업대상자는 업종(그룹)별 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②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 ③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계약 포기자 또는 계약 미이행자가 발생하면 예비후보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찰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 ④제1항의 경우 비율이 같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외국수역 조업허가 유무, 선령이 오래된 어선, 어업허가 건수가 많은 어선, 어선의 규모가 큰 어선 순으로 서열을 결정한다.
- 14.(입찰결과 통지) ①입찰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잠정사업자로 선정 시·도에 통보한 즉시 구두로 안내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7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인의 입찰금액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15.(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사 (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②평가방법 및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2010년도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붙임 3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을 내용으로 하여 산출한다.
- ③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 ④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 (캐)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사업집행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시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한다.
- (나) 사업자 선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업자 선정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6.(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①입찰결과와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②사업대상자가 포기하거나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7.(계약의 체결) ①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서식 4)와 구비서류를 사업자 선정결과를 통지 받은 후 7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집행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19.(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사업집행주체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향후 3년간 어선감척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③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향후 3년간 어선감척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해당 어선의 감정평가수수료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20.(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입찰자,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어선감척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21.(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사업집행주체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2.(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3)

##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 1.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가. 감정평가사가 어선감척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평가하되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하는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할 사항

#### 1) 선체

-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며 구톤수일 경우 신통수로 환산하며 선종, 선질,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 단가를 적용하고 평가연수,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가 수정한다.
- 선체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하여 평가한다.

< 어선의 선질별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

선 질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강 선	25	20
FRP	20	10
목	15	10

#### 2) 기관

- 기관은 해상용 기관과 육상용 기관으로 구별하여야 하며 실제 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연월, 제작회사, 규격, 회전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 원가를 결정하고 경과연수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어선은 대부분 보조기관을 시설하고 있으므로 현장 조사할 때 엔진의 중고 구입여부 등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기관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기 관	20	10

### 3) 의장품

- 의장품에 대한 평가는 복성식 평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복성식 평가법은 대상 물건별로 제조달 원가를 정한 후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의장품의 종류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 항해용 기기류, 법정 비품류 등 여러 종류의 의장품으로서 산출기관이 인정한 범위로 한다.
- 의장품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되어야 할 것은 제작연월, 회사명, 규격, 재질 등이며 의장품의 종류에 따라 규격, 재질 등 동일한 물건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그 중에서는 불용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장품 중 내용연수 3년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별 동 규모 어선의 어업인 평균 보유수량 2배 이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의장품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의장품	15	10

※ 다만,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08.8.1.)에 따른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광력조정을 위해 제거한 집어등은 잔존가치에 포함함

### 4) 어구

- 어구의 평가는 복성식 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되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감가수정은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제조달 원가의 파악에 유의하여야 하고 내용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의 내용연수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 어선별 어구의 표준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대응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대형기저(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대형기저(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동해구기저)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근해트롤(대형트롤)	트롤	Warp, 어망, 전개판	2	틀
근해트롤(동해구트롤)	저층트롤어구	Warp, 어망, 전개판	2	틀
근해선망(대형선망)	선망	Warp, 어망	1	틀
근해선망(소형선망)	선망	Warp, 어망	2	틀
근해채낚기	자동조상기	-	-	-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권현망	Warp, 어망	2	통
	건조기	1,050발 기준	2	대
	선별기		2	대
근해자망	자망	8톤~20톤 미만	15,000	미터
		20톤~40톤 미만	18,000	미터
		40톤 이상	21,000	미터
근해안강망	잡어용	어장닷 1개씩 포함	5	틀
잠수기	잠수어구	-	2	식
근해통발	장어통발	8톤~20톤	3,200	개
		20톤~40톤	5,000	개
		40톤 이상	7,000	개
	기타통발 (홍게·게)	8톤~20톤	2,500	개
		20톤~40톤	3,500	개
		40톤 이상	5,000	개
문어단지		8톤 이상	24,000	개
근해형망	형망	Warp, 어망	4	통
근해연승	주낙	-	1,000	바퀴
봉수망	봉수망	Warp, 어망	2	틀
자리돔들망	들망	Warp, 어망	2	틀

※ 다만, 아래 해역에서의 조업실적이 인정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

- 근해안강망 중 충남·경기·인천해역 : 10틀
- 근해통발(기타통발) 중 강원·경북해역 : 20톤 미만 4,000개, 20톤~40톤 5,500개, 40톤 이상 7,000개
- 근해자망 중 강원·경북해역 : 20톤 미만 38,000미터, 20톤~40톤 미만 49,000미터, 40톤 이상 75,000미터

※ 기선권현망 육상 가공시설(건조기, 선별기) 포함, 단 선단 전체가격의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선주 소유분에 한함)

(붙임 4)

## '10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근해) 입찰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사도	순위	신청업종 (그룹)별	선 명	소유자	외국수역 조업허가	선령	보유허가	톤수	소유 년월	출어 일수	선질	가치기력 (a)	입찰금액 (b)	입찰율 (b/a*100)
예시)		1그룹 (근해자망)			유무기록			신통수						
경남		2그룹 (근해통발)	57만선	홍길동	유	10	자망,연승	15	95.02	80	강			

\* 무저·조업선(선단조업 중 침몰어선 등) 신청자 내역

사도	순위	신청업종	선 명	소유자	외국수역조 업허가	선령	보유허가	톤수	소유년 월	출어 일수	선질	비고
예시)		근해자망			유무기록			신통수				무조업선
경남		대형선망	57만선	홍길동	유	10	자망,연승	15	95.02	80	강	본선 침몰

\* 어획물운반선 감척 신청자 내역

사도	우선 순위	선 명	소유자	'99.4.14 이전허가일	등록일	자가 운반선	선령	톤수	출항일 수	소유 년월	선질
예시)				허가일기재		여부기재					
경남	1	57만선	홍길동	99. 4. 10		여	15		80	95.02	강

### <작성방법>

- 문서형태/글자모양/글자크기/뛰어쓰기 : **엑셀, 굴림체, 10Point 이내, 뛰어 쓰기 없음**
- 신청 업종에는 1가지의 업종만 기입
  - 2개 업종 이상의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선이라 하더라도 신청업종은 한 업종만 기입
    - ※ 어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반드시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후 접수.
    - ※ 신청업종 결정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는 결과 초래됨.
- 선명 : “57만선”으로 기입, “제57만선호” 는 잘 못된 것임.』
- 소유자 : 2인 이상 공동 보유한 경우 소유기간 1년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소유기간 및 연령” 적용에 유리한 자 **1인만 기입**
- 외국수역 조업허가증 보유 : 있고 없음을 “유” 또는 “무”로만 기입
- 선령 : 年이하의 월 단위는 무조건 버림 (10년 6월 또는 10년 2월 → **10년**)  
경합시 월 단위는 전화 등으로 추가 확인 예정
- 보유허가 : 2 이상인 경우 띄어쓰지 않고 콤마로 이어 씀(예시: 자망,연승,기동)
- 톤수 : 신통수 기준임.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버림. 숫자만 기입 (15.83톤 → **15**)
  - \* 구톤수는 신통수로 환산 : 구톤수 × 0.72 = 신통수

- 출어 일수 : 시행기준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기간 중 조업을 위한 출어한 일수
- 소유 년월 : 78.02 또는 03.11 (예시는 1978년2월과 2003년11월을 표시한 것임)
- 선질 : 강, 목, FRP 중 1가지만 기입

○ "신청업종, 보유허가"는 아래에서 선택하여 약칭으로 기입

법 령 상		감척사업 신청서 기입	
종 류	명 칭	신청업종	보유허가 (약칭)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기저	외끌이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저	동기저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외서기저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쌍서기저
근해트롤어업	대형트롤어업	근해트롤	대트
	동해구트롤어업		동트
근해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선망	대형선망
	소형선망어업		소형선망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	채낚
기선선인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	권현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	자망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	안강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	봉수
	근해자리돔들망어업		자리돔
잠수기어업	잠수기어업	잠수기	잠수기
근해통발어업	장어통발어업	근해통발	장통
	기타통발어업		기통
	문어단지어업		문단
근해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근해형망	패형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	연승
어획물운반선	어획물운반선	운반선	운반

(붙임 5)

## 어선원 실태조사서

- 조사연도 : 2010( ○ )
- 조사방법 : 전화( ), 면담( ), 어업인 직접작성( )
- 사업분야 : 연안어선( ), 근해어선( ○ )

### 가. 선주 주소 및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 생략
주소			

### 나. 선박제원 및 허가내역

허가번호		허가기간	. . . ~ . . . ( )	
어선명	어선번호		어업의 명칭.종류	
건조일자		톤 수	허가톤수 : , 표시톤수 :	
선체재질		기관종류	육상디젤( ), 디젤( )	마력

\* “가”, “나”의 내용은 '09년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의 (서식 2)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내용 이기

### 다. 감척어선 승선 어선원 현황

출항 (조업) 일수	승선 인원	고용보험 가입현황			선원법상 실업수당 지급현황		
		가입 인원	미가입 인원	미가입 사유	지급 인원	미지급 인원	미지급 사유
*연간조업 일수	* 조업 전 까지 승 선 인원 또는 평 균 승선 인원			①외국 어선원( )명 ②65세이상 ( )명 ③상시 4명이하 고용 ④1개월 60시간 미만 근무 ( )명 ⑤여력부족 ⑥기타			① 계약기간만료 ② 20톤미만 선박 ③ 선원근로조건위반, 하선 등 ④ 선원노동위원회 인정 ⑤ 여력부족 ⑥ 기타

\* 정책 수립에만 참고함( 최종계약체결 완료 후 제출)

(참고자료 1)

### 2010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근해어선) 집행 순기(안)

구 분	일 정	집행주체
○ 사업 집행지침 시달	2. 1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입찰) 안내	2. 8 ~ 2. 22	시·도 수협·어촌계
○ 입찰공고	2. 23 ~ 3. 9	시·도
○ 입찰등록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3. 10 ~ 3. 16	시·도
○ 입찰실시	3. 17	시·도
○ 입찰결과 목록작성 및 농식품부 제출	3. 19	시·도
○ 잠정사업자 선정 통보	~ 3. 26	농림수산식품부
○ 어선·어구 감정평가 실시	~ 5. 31	시·도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 6. 30	시·도
○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7. 1 ~ 7. 30	시·도
○ 지원금 지급	8. 1 ~ 8. 31	시·도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9. 1 ~	시·도

※ 예시임

(참고자료 2)

## 감척사업 추진 절차

추진순서	수행 기관	소요 기간	내 용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농림수산 식품부	즉시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세부사업집행 지침 수립·시달	시·도	7일 이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한 사업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 ○ 입찰 신청자격, 제출서류, 입찰방법, 예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사업안내·홍보 입찰공고	시·도	30일간	○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 ○ 시·군·구에서 관할 수협, 어촌계에 입찰 안내문 발송 ○ 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기간, 입찰일시·장소, 입찰방법, 잠정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입찰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시·군 시·도	7일간	○ 입찰 참가 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참가 신청서류 접수 ○ 입찰 참가자격 유무 확인 후 유자격자에게는 입찰절차 안내 ○ 입찰 참가신청시 입찰서를 밀봉하여 동시 제출(입찰함에 보관)
입찰	시·도	1일	○ 입찰 집행관이 정해진 입찰장소에서 개봉(전국 동시 3.17. 14:00 입찰) - 수협관계자, 어업인, 공무원 등 최소 3인이상은 배석 참관 ※ 입찰등록 어업인은 누구나 참관가능, 시·도의 사정에 따라 입찰일시 1~2일 변경 가능 ○ 입찰결과 목록작성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잠정사업자 선정	농림수산 식품부	5일	○ 잠정 사업대상자 결정 - 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결정 ○ 유찰시 재공고 입찰 -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 ○ 입찰결과 시·도 통보 - 시·도에서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일정 및 포기시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평가	시·도	60일	○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 가치 평가 - 2개의 감정평가법인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시·도	30일	○ 예산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체결
폐업어선 처리 어업허가취소	시·도 시·군	30일	○ 어선·어구, 시설물 등 폐업어선 해체처리 ○ 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지급	시·도 시·군	30일	○ 폐업지원금 입찰금액과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금액을 지급
사업 정산	시·도	30일	○ 사업결과 취합 및 자금 정산 후 반납

※ 예시임

(참고자료 3)

## 표준입찰공고문

○○시·도 공고 제2010 - 호

###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근해어선)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근해어선 일반감척 《업종(그룹)별 척》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10. . . : / ○○시·도 ○○과  
※ 입찰참가서류 제출시 입찰서를 밀봉하여 동시 제출
4.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 3. 17. 14:00 / ○○시·도 회의실  
※ 입찰참가어업은 누구나 입찰 집행장에 배석하여 참관 가능
5.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 가. 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나.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도 사업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방법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 가.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최종사업자 선정 후 10일 이내
  - 나. 계약이행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향후 3년간 어선감척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라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향후 3년간 어선감척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해당어선의 감정평가수수료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 7.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 (1)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 ①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③ 조업실적은 출입항 신고실적으로 확인하며 실질적인 어업활동과 관련된 것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3)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 전 선박안전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입찰참가 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

도 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
- (5)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①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 ②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구조 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③ 대상어선이 법령 등에 의해 기 보상되었거나 관리 대상이 되는 자
-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8. 입찰의 무효 :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제10항에 의합니다.

9. 입찰참가서류

-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다. 인감증명서 1부
- 라. 입찰서 1부.
- 마.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10.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

(단위 : 천원)

어업 종류별	톤급단위(본선기준)	기초금액	비 고

가. 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나. 이번 입찰은 폐업지원금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별도로 개별 평가합니다.

## 11. 기타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감척사업 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 ○○과(전화번호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 .

○○ 시·군·구 입찰집행관

(참고자료 4)

## 입찰서(예시)

입찰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2010 - ○○호	입찰일자	2010. . .
	건명	2010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입찰 (근해어업 ○○업종, ○척, ○톤)		
	금액	금일천사백오십이만오천원정 (₩ 14,525,000)		
입찰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9101112
	주소	○ ○ ○	전화번호	011-123-4567
선박재원	선명	○ ○ ○	어업의 종류	연안자망어업
	신통수	톤	건조일자	1999. 9. 9
<p>본인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기관이 정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어업허가를 반납하고 어선을 폐선 처리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10. .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입찰자 아무개 (인감도장 날인)</p> <p style="margin-top: 20px;">○○도지사(시장) 귀하</p>				

※ 본 입찰서 예시를 입찰장에 미리 부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5)

## 홍보물 내용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근해) 입찰 참가요령 등을 안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의 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잔존 어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2. 사업대상

감척대상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입찰 안내문과 입찰 공고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3. 사업방법

폐업지원금(어업손실액)에 대하여 저가 입찰제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치 평가액을 합하여 지원합니다.

### 4.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 가치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5. 사업참가자격

#### ○ 신청자격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최근 2년이내에 9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자

(조업실적은 출입항 신고실적으로 확인)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 제외대상

최근 5년 이내에 감척한 경험이 있는 자(국제감척 및 소형기저 정리사업 포함)  
대상어선이 법령 등에 의해 기 보상되었거나, 관리 대상 이 되는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어업자

6. 입찰방법

○ 입찰안내

입찰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금년도 감척대상 업종, 예산, “어선감척  
사업 입찰유의서” 등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입찰공고

입찰 공고문은 지자체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할 수협, 어촌계 등  
에도 보내드리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문에는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입찰에 붙이는 사항

입찰방법(입찰참가 신청시 입찰서를 밀봉하여 동시제출)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체결 방법

입찰참가 자격

입찰참가 신청서류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등급별 기초가격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입찰참가 신청서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입찰서 1부

기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 ○ 입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입찰 공고문에는 입찰에 붙이는 대상 업종의 톤급별로 기초금액을 안내합니다. 폐업지원금에 한해서만 입찰을 실시한다는 것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집행

정해진 날짜에 입찰장소에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참가 신청어업인은 누구나 입찰장에 입장하여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사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예비후보자로 관리되며,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예산이 남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재공고 입찰에도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 협상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 입찰결과 안내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의 집행절차, 중도포기자에 대한 제재, 예산의 지원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개인별로 알려드립니다.

## 7. 최종 사업자 선정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를 평가합니다.

사업대상자의 폐업지원금과 잔존 가치액을 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면 예비후보자 중 우선 순위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8. 계약체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1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내용은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향후 3년간 어선감척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향후 3년간 어선감척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해당어선의 감정평가수수료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 9. 폐선처리

감척어선은 선박해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폐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어업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선 내 기관, 장비 등은 매각할 수 있으나 선체는 반드시 해체하여야 합니다.

어업인이 직접 장비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그만큼 지원금에서 공제합니다.

## 10. 지원금 지급

해당 어선이 최근 5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어업인이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 11. 기타사항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입찰 안내문과 입찰 공고문 그리고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등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